

중국의 한국산 견과류 수입가능 여부 조사자료

자 료 원 : 베이징aT센터

□ 한국산 견과류 수입가능 여부

- 현재 한국산 견과류(신선)는 위험평가분석(검역협정)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

* 현재 한국산 과실류가 중국에 수출불가능한 원인이 동일

-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주관부서에서 견과류 제품 위험평가분석을 중국 측에 신청 후 질검총국에서 관련제품에 대하여 위험평가분석이 이뤄진 후 최종 수입여부가 결정됨

* 타 국가 사례 : 칠레산 탈각호두 식물검역증서

http://jckspaqj.aqsiq.gov.cn/xz/ggshgigzwyjzs/201401/t20140117_394514.htm

- 다만 검역협정대상은 HS코드로 중국세칙 8장 내 신선건조 과실 견과류만 해당되며, 심가공제품의 경우 검역협정대상이 아님
- 이에 따라 HS분류과 8과에 해당되지 않는 견과류 가공제품의 경우 중국 내 수출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

조사 문의처 :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

010-8226-2029